보도자료

| 보도시점 | 2023. 10. 31.(화) 위원회 종료(별도 안내) 이후 | 배포 | 2023. 10. 31.(화) |
|---|---|---|---|

#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182%(소득대비)

- 재정 여건 및 물가·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-

-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**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**를 개최하고, **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**이 **소득의 0.9182%(건강보험료 대비 12.95%)**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.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**1.09% 인상**된 것으로, **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**의 인상률이다. 2024년 가입자 **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**는 **16,860원**으로 2023년 16,678원에서 **182원 증가**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번 보험료율은 **제도 발전 필요성, 지속가능성, 국민 부담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.

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,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 2024년도 **장기요양 수가**는 **평균 2.92% 인상**된다. 특히, **노인공동생활가정(입소정원 5~9명)**과 **단기보호 기관**의 경우에는 **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**를 위한 **추가 인상분**을 반영하였다.

보건복지부는 **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** 장기요양 **재가급여를 활성화**할 예정이다. **중증(장기요양 1·2등급) 재가 수급자**의 **이용 한도액을 인상**하고,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**'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'**(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)를 도입한다. 재택의료센터 등 **다양한 재가서비스** 제공을 위한 **시범사업**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.

**요양보호사 처우개선**을 위해 **'선임 요양보호사'** 제도를 신설하는 등 **요양보호사 승급체계**를 도입한다. 또한,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수가 가·감산 제도**(특정 조건을 (불)충족 시 수가를 (감)가산)도 **조정**할 계획이다.

**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**은 "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% 이상인 **초고령사회에 진입**하게 된다"라며, "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**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** 수 있도록 **제도를 발전**시켜 나가면서 **제도의 지속가능성**도 높이겠다."라고 말했다.

< 상 세 본 >

## 1.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

□ **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**은 2023년도 0.9082% 대비 **1.09% 인상된 0.9182%**로 결정되었다.

○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, 2024년부터는 **건강보험료의 12.95%**를 적용하게 된다.

○ 2024년 가입자 **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**는 **16,860원**으로 2023년 16,678원에서 **182원 증가**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**초고령사회를 대비**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**발전, 지속가능성, 국민 부담 최소화**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.

○ 특히,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, **어려운 경제 여건**을 고려하여 **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**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.

* 장기요양보험료율(소득 대비) 인상률 추이 :
'18년 14.9%, '19년 19.4%, '20년 24.4%, '21년 15.6%, '22년 8.5%, '23년 5.9%

(단위 : %)

| | '18 | '19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보험료율 (소득대비)** | **0.4605** | **0.5497** | **0.6837** | **0.7903** | **0.8577** | **0.9082** | **0.9182** |
| **인상률** | (14.9) | (19.4) | (24.4) | (15.6) | (8.5) | (5.9) | (1.09) |
| **보험료율 (건보료 대비)** | **7.38** | **8.51** | **10.25** | **11.52** | **12.27** | **12.81** | **12.95** |
| **인상률** | (12.7) | (15.3) | (20.4) | (12.4) | (6.5) | (4.4) | (1.09) |

□ 한편, 2024년 **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(2조 2,268억 원)**은 2023년(1조 9,916억 원) 대비 **11.8% 확대 편성**되었으며,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**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**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□ 이를 통해 내년도 **약 110만 명**에 가까운 **장기요양 수급자**가 **재가 및 시설 서비스**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장기요양 수급자 수(만 명) : ('20) 85.8 → ('21) 95.4 → ('22) 101.9 → ('23.8월) 107.6

## 2.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

□ **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**는 2023년도 대비 **평균 2.92% 인상**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.

○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.72%, 노인요양시설 3.04%, 공동생활가정 3.24% 등이다.

**<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>**

(단위 : %)

| 평균 | 요양시설 | 공동생활가정 | 주야간보호 | 단기보호 | 방문요양 | 방문목욕 | 방문간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.92 | 3.04 | 3.24 | 3.05 | 11.46 | 2.72 | 3.06 | 3.34 |

○ 특히,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**노인공동생활가정(입소정원 5~9명)의 경영난* 해소**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**관리운영비 추가 인상**이 반영되었다.

*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,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 △2.3%

- 또한,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*하고 있는 **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**를 위해 **단기보호 수가**를 **추가로 인상**하였다.

* ('09년) 1,368개소 → ('13년) 368개소 → ('22년) 130개소

○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**요양시설**을 이용할 경우의 **1일당 비용**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,750원에서 **84,240원(+2,490원)**으로 인상된다.

- **한 달(30일)간** 이용 시 **총 급여비용**은 **252만 7,200원**이고, **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**은 **50만 5,440원**이 된다(본인부담률 20% 기준).

**<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>**

(단위 : 원)

| 비교 / 등급 | 노인요양시설 | | 노인공동생활가정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'23년 수가 | '24년 수가 | '23년 수가 | '24년 수가 |
| 1 | 81,750 | 84,240 | 68,780 | 71,010 |
| 2 | 75,840 | 78,150 | 63,820 | 65,890 |
| 3, 4, 5 | 71,620 | 73,800 | 58,830 | 60,740 |

○ **방문요양 · 목욕 · 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** 등 **재가서비스** 이용자의 **월 이용 한도액**은 **등급별로 1만 9,100원 ~ 18만 4,900원** 늘어나게 된다.

**<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>**

(단위 : 원)

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3년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| 2024년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| (증가액) | 184,900 | 179,600 | 38,600 | 35,600 | 30,500 | 19,100 |

## 3. 주요 제도개선

□ 2024년도에 추진될 **주요 제도개선**은 크게 **재가급여 활성화** 방안, **요양보호사 처우개선** 방안, **서비스 질 강화** 방안이다.

○ 노인이 **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**를 보낼 수 있도록 **재가급여 강화**를 추진한다.

- **중증(장기요양 1·2등급) 재가 수급자**가 **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**을 받을 수 있도록 **이용 한도액을 인상***하고, **8시간 방문요양** 이용 가능 횟수를 **월 6일에서 8일로** 상향 조정한다.

  * '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, '23년 시설급여 대비 74~77% → '24년 80~82% 수준으로 인상

-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**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** 수급자가 **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·종일방문요양(12시간)을 이용**할 수 있도록 **'장기요양 가족휴가제'**를 도입한다.

  *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

- **재택의료센터, 통합재가서비스,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** 등 재가서비스 시범·예비사업도 **확대**하여, 수급자가 **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**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  1」 재택의료센터 :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, 간호서비스 등 제공 ('23년 28개소 → 100개소)

  2」 통합재가서비스 : 기존 단일급여(방문요양 중심) 위주의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('23년 75개소 → 200개소)

  3」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: 재가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·화재·위생·편의 등 품목 시공 ('23년 15개 지역 → '24년 전국 확대)

○ **요양보호사 처우 개선**을 위해 **'요양보호사 승급제'**를 도입한다(2024년 10월~).

- 일정 조건*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**'선임 요양보호사'**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**매월 15만 원을 수당**으로 지급한다.

  *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, 승급교육(40시간) 이수자

- 아울러, **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**의 **원활한 보수교육 이수**를 위해, **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**에 대해 **95,000원(2년간 1회)**을 지원한다.

○ 장기요양기관이 **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**할 수 있도록 **수가 가·감산* 제도**를 조정하고, **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**을 지속 추진한다.

*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추가(가산)하거나, 불충족한 경우 수가를 감액(감산)하는 제도

-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**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**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**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**하였으나, **기관의 안정적 운영**을 위해 **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**만 적용한다.

- 현재 추진 중인 **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**한다.

*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: 기존 2.5 : 1 → '22.10월 2.3 : 1 → '25년 2.1 : 1

- 또한 **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**를 제공하는 **전문요양실 시범사업**도 **확대**해 추진한다(2023년 25개소 → 2024년 30개소).

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2024년도 수가·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개선 사항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**「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」**을 **차질 없이 이행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**은 "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% 이상인 **초고령사회에 진입**하게 된다"라며, "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**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** 수 있도록 **제도를 발전**시켜 나가면서 **제도의 지속가능성**도 높이겠다." 라고 말했다.

**<붙임> 1. 장기요양위원회 개요**
**2.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**
**3.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**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<br><보험료율><br><수가> | 노인정책관<br>요양보험제도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은영 (044-202-349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강태수 (044-202-3499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진수현 (044-202-3493) |
| <기관><br><인력> | 노인정책관<br>요양보험운영과 | 책임자 | 과 장 | 임동민 (044-202-35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안희정 (044-202-3513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창배 (044-202-3511) |

**붙임1** **장기요양위원회 개요**

## □ 목적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*에 따라 **장기요양보험료율, 장기요양급여 지급기준 및 비용** 등 장기요양보험의 **주요 사항을 심의**하는 위원회

* 제45조(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.
1.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
2.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
3.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

## □ 구성

○ **위원장 : 보건복지부 제1차관**

○ **위원** : 가입자·공급자·공익 위원 각 7인(위원장 포함 총 22인)

| 공익대표 7인 | 가입자 대표 7인 | 공급자 대표 7인 |
|---|---|---|
| • 복지부·기재부 고위공무원<br>•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<br>• 장기요양 관련 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| • 근로자단체<br>• 사용자단체<br>• 시민단체<br>• 노인단체<br>•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업자 단체 대표 | •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|

○ **위원 임기 : 3년**

* 제46조(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)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.
1. 근로자단체, 사용자단체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, 노인단체,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
2.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,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,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

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붙임2** **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**

## <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>

(단위 : 원)

| 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'23년 한도액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| '24년 한도액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| 인상률 | 9.81% | 10.63% | 2.72% | 2.73% | 2.72% | 3.06% |

## <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>

### ① 노인요양시설

(단위 : 1일, 원)

| 등급 | '23년 수가 | '23년 본인부담 | '24년 수가 | '24년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81,750 | 16,350 | 84,240 | 16,848 |
| 2 | 75,840 | 15,168 | 78,150 | 15,630 |
| 3,4,5 | 71,620 | 14,324 | 73,800 | 14,760 |

### ② 공동생활가정

(단위 : 1일, 원)

| 등급 | '23년 수가 | '23년 본인부담 | '24년 수가 | '24년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68,780 | 13,756 | 71,010 | 14,202 |
| 2 | 63,820 | 12,764 | 65,890 | 13,178 |
| 3,4,5 | 58,830 | 11,766 | 60,740 | 12,148 |

## ③ 주야간보호

(단위 : 원)

| 등급 | | '23년 수가 | '23년 본인부담 | '24년 수가 | '24년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| 1등급 | 38,630 | 5,795 | 39,810 | 5,972 |
| | 2등급 | 35,760 | 5,364 | 36,850 | 5,528 |
| | 3등급 | 33,010 | 4,952 | 34,020 | 5,103 |
| | 4등급 | 31,510 | 4,727 | 32,470 | 4,871 |
| | 5등급 | 30,000 | 4,500 | 30,920 | 4,638 |
| | 인지지원등급 | 30,000 | 4,500 | 30,920 | 4,638 |
| 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| 1등급 | 51,780 | 7,767 | 53,360 | 8,004 |
| | 2등급 | 47,960 | 7,194 | 49,420 | 7,413 |
| | 3등급 | 44,270 | 6,641 | 45,620 | 6,843 |
| | 4등급 | 42,770 | 6,416 | 44,070 | 6,611 |
| | 5등급 | 41,240 | 6,186 | 42,500 | 6,375 |
| | 인지지원등급 | 41,240 | 6,186 | 42,500 | 6,375 |
|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| 1등급 | 64,400 | 9,660 | 66,360 | 9,954 |
| | 2등급 | 59,660 | 8,949 | 61,480 | 9,222 |
| | 3등급 | 55,080 | 8,262 | 56,760 | 8,514 |
| | 4등급 | 53,580 | 8,037 | 55,210 | 8,282 |
| | 5등급 | 52,050 | 7,808 | 53,640 | 8,046 |
| | 인지지원등급 | 52,050 | 7,808 | 53,640 | 8,046 |
| 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| 1등급 | 70,950 | 10,643 | 73,110 | 10,967 |
| | 2등급 | 65,720 | 9,858 | 67,720 | 10,158 |
| | 3등급 | 60,720 | 9,108 | 62,570 | 9,386 |
| | 4등급 | 59,190 | 8,879 | 61,000 | 9,150 |
| | 5등급 | 57,690 | 8,654 | 59,450 | 8,918 |
| | 인지지원등급 | 52,050 | 7,808 | 53,640 | 8,046 |
| 13시간 초과 | 1등급 | 76,080 | 11,412 | 78,400 | 11,760 |
| | 2등급 | 70,480 | 10,572 | 72,630 | 10,895 |
| | 3등급 | 65,110 | 9,767 | 67,100 | 10,065 |
| | 4등급 | 63,600 | 9,540 | 65,540 | 9,831 |
| | 5등급 | 62,100 | 9,315 | 63,990 | 9,599 |
| | 인지지원등급 | 52,050 | 7,808 | 53,640 | 8,046 |

## ④ 단기보호

(단위 : 1일, 원)

| 등급 | '23년 수가 | '23년 본인부담 | '24년 수가 | '24년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63,250 | 9,488 | 70,500 | 10,575 |
| 2 | 58,570 | 8,786 | 65,280 | 9,792 |
| 3 | 54,110 | 8,117 | 60,310 | 9,047 |
| 4 | 52,680 | 7,902 | 58,720 | 8,808 |
| 5 | 51,240 | 7,686 | 57,110 | 8,567 |

## ⑤ 방문요양

(단위 : 원)

| 방문당 시간 | '23년 수가 | '23년 본인부담 | '24년 수가 | '24년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| 16,190 | 2,429 | 16,630 | 2,495 |
| 60분 | 23,480 | 3,522 | 24,120 | 3,618 |
| 90분 | 31,650 | 4,748 | 32,510 | 4,877 |
| 120분 | 40,280 | 6,042 | 41,380 | 6,207 |
| 150분 | 46,970 | 7,046 | 48,250 | 7,238 |
| 180분 | 52,880 | 7,932 | 54,320 | 8,148 |
| 210분 | 58,930 | 8,840 | 60,530 | 9,080 |
| 240분 | 65,000 | 9,750 | 66,770 | 10,016 |

## ⑥ 방문목욕

(단위 : 원)

| 구분 | '23년 수가 | '23년 본인부담 | '24년 수가 | '24년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차량이용(차량 내) | 82,160 | 12,324 | 84,670 | 12,701 |
| 차량이용(가정 내) | 74,070 | 11,111 | 76,340 | 11,451 |
| 차량 미 이용 | 46,250 | 6,938 | 47,670 | 7,151 |

## ⑦ 방문간호

(단위 : 원)

| 방문당 시간 | '23년 수가 | '23년 본인부담 | '24년 수가 | '24년 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15분~30분 미만 | 39,440 | 5,916 | 40,760 | 6,114 |
| 30분~60분 미만 | 49,460 | 7,419 | 51,110 | 7,667 |
| 60분 이상 | 59,500 | 8,925 | 61,490 | 9,224 |

**붙임3** **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**

□ (목적) 고령,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**신체·가사활동** 등을 지원, **노후생활 안정** 및 **가족 부담 완화**
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.4.27 제정, 2007.10.1. 시행 (제도시행 2008.7.1.)

□ (대상)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)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

□ (급여)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*

('22년말 기준)

| 구분 | 내 용 | 기관 수 |
|---|---|---|
| 재가급여 |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<br>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복지용구) | 21,334개소 |
| 시설급여 |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| 6,150개소 |
| 계 | | 27,484개소 |

* 도서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

□ (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) 인정자 101.9만 명, 이용자 86.1만 명

○ 전체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약 10.9%인 101.9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

(단위: 명, '22년말 기준)

| 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,019,130 | 49,946 | 94,233 | 278,520 | 459,316 | 113,842 | 23,273 |
| (100%) | (4.9) | (9.2) | (27.3) | (45.1) | (11.2) | (2.3) |

□ (등급 구성)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

| 구 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공 급여 | 재가+시설 | | 재가* | | | 주·야간보호 |
| | 치매가족휴가제 (종일방문요양) | | | | | |
| | 치매가족휴가제(단기보호), 복지용구(재가급여 이용 시) | | | | | |

*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: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